

부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33494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 6. 30. 접수 제80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관계

(1) 남매인 D, E는 'F'라는 상호로 종자 수입판매업 등에 종사해 왔는데, 2000. 1. 2.경 피고 B(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일본어에 능통하였다)를 채용하여 일본 소재 종자 수출업체 'G'(이하 '일본 회사'라고 한다)와의 계약교섭 등 무역실무에 종사하도록 해 왔다.

(2) E는 2005.경부터 단독으로 F를 경영하던 중, 2009. 9. 14.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일본 회사와의 거래 중단

(1) 원고는 2년마다 일본 회사와 종자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종자를 수입해 오던 중, 2019. 1.경 일본 회사로부터 2년치 종자(우엉, 부추, 시금치 등)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6.경 종자를 인수한 후, 판매 부진으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3,200만엔 가량의 대금결제를 한달 가량 지체하였다.

(2) 일본 회사는 그 무렵 '원고가 남은 종자의 인수를 거절하여 약 3,500만엔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고 B는 E에게 '일본 회사가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3) 피고 B는 그 후 일본 회사와의 거래에 관해 묻는 E에게 '담당자가 출장갔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만 보고하였다.

다. 경쟁업체의 설립

- (1)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은 2020. 11. 11. H를 설립하였다.
- (2) H는 2021. 2.경부터 일본 회사로부터 원고가 거래하던 것과 동일한 종자를 수입한 후, 원고의 판매가보나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 주주의 변동

- (1) I은 2021. 5. 25.경 E로부터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피고 B에게 일본 회사와의 거래재개를 지시하였다.
- (2) 한편 원고는 2022. 1.경 피고 B를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여도 400만원(종전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마. 피고 B의 퇴사

그러함에도 피고 B는 I에게도 ‘일본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일본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일본 회사와의 거래재개 업무에 진척이 없었고 피고 B가 담당한 사업영역에 막대한 손실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I은 2022. 3. 21.경 피고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고 B는 2022. 3. 31. 원고를 퇴사하였다.

바. 피고들간 아파트 증여

피고 B는 2022. 6. 30.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 14 내지 21, 24, 26호증, 을제1 내지 4,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청구

피고 B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인 피고 C와 함께 'H'를 설립한 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거래업체 정보, 종자·종묘 등 상품 정보를 활용하여 일본 회사로부터 종자를 수입·판매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로 하여금 일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료, 기술 등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내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J'의 품종생산·수입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2021. 9. 1.부터 2023. 2. 10.까지 원고가 일본 회사로부터 종자를 수입·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173,260,273원(연간 1억 2,000만원 × 527일/365일) 상당 손해, ② 'J'에 대한 영업상 비밀 누설로 인한 손해 5,000만원의 합계 223,260,273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 B는 원고를 퇴사한 후 H를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1) 일본 회사와의 거래 방해 부분

(가) 원고는 2년마다 일본 회사와 종자 수입계약을 체결해 오던 중, 2019. 1.경 2년치 농작물 종자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6.경 종자를 인수한 후, 판매 부진과 자금회수 지연으로 3,200만엔 가량의 대금결제를 한달 가량 지체하였던 사실, 일본 회사는 그 무렵 '원고가 남은 종자의 인수를 거절하여 약 3,500만엔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E에게 '일본 회사가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그 후 일본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묻는 E에게 '담당자가 출장갔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답변하던 중, 2020. 11. 11. H를 설립하였던 사실, H는 2021. 2.경부터 일본 회사로부터 원고가 거래하던 종자를 수입한 후, 원고의 판매가보나 염가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21.

5. 25.경 원고를 인수한 I으로부터 일본 회사와의 거래재개를 지시받고도 ‘일본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거래재개 업무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2. 3. 31.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또한 갑제4, 5, 6, 7, 8, 9, 10, 11, 12, 13, 14,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년 일본 회사로부터 2 내지 4억원 가량의 종자를 수입·판매하여 매년 1억원 내지 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던 사실, H가 2021. 2.경부터 원고 몰래 원고의 거래처들에게 일본 회사로부터 수입한 종자를 판매하고 그 가격마저 원고의 판매가보다 염가로 책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막대한 재고가 쌓이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B가 퇴사한 후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 B(H)가 일본 회사로부터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B가 사용하던 PC들을 확인한 결과, 피고 B가 2022. 2. 15.자로 작성한 수출식물 검역신청서(갑9), 2022. 3. 17.자로 발급받은 종자소독증(갑8) 등 종자수입 통관서류를 발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들이 부부관계이고, H의 거래처들이 대부분 원고의 거래처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거나 적어도 그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B는 스스로 원고의 수입 거래처이던 일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후,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I으로부터 거래재개 교섭을 지시받게 되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영진을 속이며 의도적으로 교섭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원고와 일본 회사의 거래 재개가 계속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E가 피고 B에게 보고받은 거래 중단 사유와 일본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 중단 사유가 다른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중간에서 E에게는 ‘대금 지급 지체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일본 회사에는 ‘남은 계약물량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③ 위와 같은 거래 방해행위와 원고와 일본 회사간 거래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㉞ 원고는 당시 남은 계약물량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대금결제를 지체하였을 뿐이므로, 의사소통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쌍방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고 지체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실제로 E의 증언에 비추어, E는 일본 회사와 소통함으로써 거래를 속행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㉔ 설령 E 당시의 원고가 종전 약정 물량 중 남은 부분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일본회사는 종전 거래관계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I 이후의 원고로서는 종전 거래를 정산한 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㉕ 나아가 종전 거래의 결과도 쌍방간의 교섭을 통해 잔대금의 범위, 손해배상 여부나 배상의 범위를 충분히 교섭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㉖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 일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일본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고라도 거래를 재개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점, ㉗ 실제로 I이 피고 B에게 거래 재개를 위한 교섭을 지시·재촉한 것으로 보아 I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의 원고는 거래 재개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거래 방해행위로 인해 원고와 일본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가 깨어졌거나 거래재개가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거래 계속 또는 재개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창출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㉘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 시도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I에게 거래 재개를 건의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㉙ 갑제22, 23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경 피고 B에게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를 위한 교섭을 지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오히려 당시 원고가 적극적으로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피고 B의 방해로 불발되었음을 반증하는 점, ㉚ 당시 피고 B는 I에게 일본 회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며 거래 재개를 방해하는 한편, H를 통해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㉛ 갑제16호증, 갑제19호증의1, 2의 각 기재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를 희망하였으나, 피고 B의 방해로 거래 재개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㉜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들은 '2020. 11.경 E로부터 "조만간 회사(원고)가 정리될 것이니 알아서 먹고 살 방법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2020. 11.경 H를 설립하였다', '원고가 당시 존립이 위태로웠다',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㉝ I은 회사 인수 후 피고 B의 급여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2. 1.경 부장으로 직위를 승진시키는 등 적극적 경영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경영 유지를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㉞ E도

경쟁업체의 설립을 허락한바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점, ㉔ 피고 B가 당시 원고와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를 방해하는 한편 H를 통해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배신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를 야기하던 중 스스로의 행동으로 퇴직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㉕ 또한 피고 B는 당시 원고의 국내 판매처들에 수입한 종묘를 판매하면서 그 가격마저도 고의로 염가로 책정함으로써 원고의 국내 판매처조차 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㉖ 갑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는 E에게 ‘몸으로 때우겠다’며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를 눈치 챌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그로 인한 책임 유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㉗ 결국 피고 B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성실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배임적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도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일본 회사에 거래를 요청하였더라도,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을제12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㉙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일본 회사의 거래 중단은 남은 계약물량의 인수 의사 유무에 관한 오해나 의사소통 부재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관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㉚ 설령 원고가 종전에는 남은 물량의 인수와 거래 중단을 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새로운 경영진이 일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의사였던 경우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㉛ 한편,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본문화에도 익숙한 피고 B는 일본 회사의 담당자와 오랜기간 교류해 오면서 상당한 친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고 B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인적 유대 및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일본 회사측 진술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㉜ 일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왕 거래관계를 맺은 이상 거래처인 피고 B(H)의 이익을 보호하여 줄 필요성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㉝ 또한 을제12호증은 ‘원고는 신용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종전 메일(갑22, 23, 을5)의 내용(현 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종전에 계약한 종자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거래할 수 없었다)과는 어조가 상당히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입장변화를 설명할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오히려, 을제12호증의 기재는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하고 그 상태가 지속된 결과 원고와 일본 회사의 거래재개 가능성마저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을제1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서증만으로는 I이 피고 B에게 거래 재개를 지시하였을 당시 일본 회사와의 거래재개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와 공동하여 적어도 2021. 2.경부터 원고의 수입처와 판매처를 도용한 후 배임적 거래행위를 하다가, I의 회사 인수 후에는 거래 재개조차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J와의 정보공유 행위 부분

(가) 갑제8 내지 14,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E, K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퇴사한 후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 B(H)가 일본 회사로부터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B가 사용하던 PC들을 확인한 결과, 피고 B가 경쟁 업체인 ‘J’를 위해 작성한 수건의 업무용 문건(갑10 내지 13)을 발견하였던 사실, 피고 B가 사용하던 업무용 PC는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입력되어 있었는데, 그 로그인 정보는 J의 것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 B는 국립종자원 웹사이트에 J 명의로 생산·판매 종자들(L 시금치, M 양파, N 시금치, O 양파, P 토마토, Q 고추 등)의 정보를 등록신고하면서 원고가 만들어진 자료들(육성표 등)을 그대로 전용하였던 사실, 피고 B는 J의 K와 국립종자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제25호증의 기재, 증인 E, K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7. 9.경 거래업체인 J의 직원 K로부터 ‘R 대파 종자를 수입·판매하려고 하니, 원고 명의로 국립종자원에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고, 2018. 4.경에도 S 시금치 종자를 원고 명의로 등록해 주는 등 J와 업무를 협조해 온 사실, 원고도 대파, 시금치 등의 종자를 국립종자원에 등록함에 있어 J(K)의 도움을 수차 받았던 사실, 원고는 종자등록 양식 중 상당 부분을 J(K)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원고는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J가 등록한 등록자료(육성경과도표, 육성계통도 등)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J는 원고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아 소매업체 등에 공급하는 원고의 거래처로서 원고와는 특별한 경쟁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도 J와 업무협조를 하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 B의 행위도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2) 갑제4 내지 6, 24호증의 기재, 중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부터 2020.까지 일본 회사로부터 합계 742,690,000원 어치의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합계 1,103,694,000원의 매출을 올렸던 사실, 피고들(H)은 2021. 2.부터 2022. 10.까지 일본 회사로부터 합계 25,097,360엔(2023. 2. 8.자 환율 100엔당 960.67원 기준, 한화 241,102,808원)의 종자를 수입한 사실, H는 2021년부터 2022년 1기분까지 합계 117,386,366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H가 수입·판매한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동안 얻은 전매차익은 합계 361,004,000원(판매가 1,103,694,000원 - 수입가 742,690,000원)으로서 수입액 대비 전매차익률이 대략 48.6%(361,004,000원 / 742,690,000원)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들은 원고와 일본 회사의 거래를 차단시킨 후 그 거래를 가로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는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일본 회사와의 거래를 주도한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비슷한 수준의 전매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H가 일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결국 H의 월 평균 전매차익은 5,579,808원[(2021. 2.부터 2022. 10.까지 21개월간의 수입금액 241,102,808원 × 전매차익률 48.6%) / 21개월]으로 추산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실한 이득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기 시작한 시점은 H가 원고와 동종 상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21. 2.부터라고 할 것인데, H가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하는 데에는 대략 한 달 가량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1. 3. 1.부터 손해를 계산함이 상당한 점, ⑤ 그런데 손해액 계산의 종기와 관련하여, ㉗ 앞서 본바와 같이, 을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 회사는 현재 ‘원고와는 거래 재개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는 피고 B의 거래 방해행위로 거래가 중단된 후 거래처 침탈 상태가 지속된 결과 거래재개 가능성마저 소멸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㉘ 다만, 장래의 일실수익에 대한 호프만식 허가방법을 채택할 경우 월 단위 허가율이 240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등 참조), 월 단위 허가율 240을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월 단위

수익금액(5,579,808원)에 호프만식 월 단위 현가율 상한치 240을 곱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일수익은 일일 1,339,153,882원(5,579,808원 × 240)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상 퇴사한 피고 B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B가 퇴사 후 허용되는 방법으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원고와 유의미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이후의 영업에 대하여는 원고의 영업수익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인 점(다만, 일본 회사로서도 기존 거래처인 원고를 무시하고 바로 피고들이 신설한 업체와 거래하는 신뢰위반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원고와 일본 회사의 거래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피고 B가 퇴사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회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과 무관한 돌발적 경영위기로营业을 중단하거나 영업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 점, 위 수익률에서 원고가 일본 회사와의 거래 재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다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적 비용은 일본 회사와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위 인정금액의 50% 가량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은 669,576,941원(1,339,153,882원 × 50%)이 된다.

(4) 공제

한편, 일본 회사는 ‘원고가 남은 종자의 인수를 거절하여 약 3,500만엔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위 돈의 배상을 전제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500만엔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의 거래를 재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수익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손해는 333,342,442원[669,576,941원 - (3,500만엔 × 1엔당 환율 9.6067원)]이 남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33,342,44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3. 2. 10.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증여에 따라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H를 설립한 후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주인 자신 명의로 이전받았을 뿐이고,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부부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 B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바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 C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